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86
----------	------------

제안일자 : 2019년 11월 2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예방 대책을 제외하고 대응 대책만 수립토록 수정하고, 시장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3조제4항에서 관리주체 부담원칙 하에 재정형편에 따라 시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어린이 놀이시설 예방 대책을 제외하고 대응 대책만 포함시킴(안 제3조2항제7호).
- 나. 어린이 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예방 및 대응”을 “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안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u></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u>제7조의2(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 ----- 대응 ----</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③·④ (생략)</p>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